

[별표4]

정보보호 공시내용 검증 동의서

정보보호 공시내용 검증 동의서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현황을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 공시내용 점검
및 사실 관계 증명을 위하여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제13조제4항, 「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」 제10조에 의거, 검증을 진행할 수
있으며,

OOO은 검증 진행에 동의합니다.

- 공시자료 수집·이용 목적 : 정보보호 현황의 확인 및 점검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
- 보유 및 이용기간 : 공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일로부터 3주간
보유하며, 이후 지체 없이 파기

☐ 정보보호 공시 자료 제출 요구 내용

1. 요구목적

- 공시 기업 정보보호 현황의 투명성·신뢰성 확인

2. 요구항목

- 정보보호 공시 항목(투자액, 인력, 인증·평가·점검 사항, 정보보호 활동)의
관련 산출 근거 자료 등
-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, 분쟁사실이 발생할 경우, 이를 과학
기술정보통신부에 알림

3. 요구방법

- 관련 자료 서면 제출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

(회사명) 대표이사 OOO는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.

0000. 00. 00.

(회사 대표이사)